

#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

## 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8월 17일, 김경숙 의원 외 29명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

(2023년 8월 30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토론, 의결)

## 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경숙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이용권을 지원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.

○ 조례 제명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, 지원 대상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을 「경상북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」로 변경함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함(안 제2조)
-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3조)
- 문화이용권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)
- 문화이용권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)
- 위임·위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)

#### 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성태)

##### 가. 조례 개정의 필요성

- 본 조례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“문화이용권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명과 지원대상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,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을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「경상북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」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용어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.
-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문화소외계층”, “문화이용권”, “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”의 법령 내용을 준

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
### [ 용어의 정의 ]

####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**제2조(정의)**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~3. 생략

4. “문화이용권”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·전시·영화·도서·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된 증표를 말한다.

② 생략

####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

**제23조의2(문화소외계층의 범위)**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5. 11. 30.>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
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

다. 「장애인연금법」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

라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
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

4. 그 밖에 경제적·사회적·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

- 안 제3조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계층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 등의 책무와 문화이용권의 매매와 양도 등 용도이외의 사용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.
- 안 제4조는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으로 하며,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.

- 안 제5조는 문화이용권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료 또는 이용료, 여행 경비 및 스포츠 활동비,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지원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.
- 안 제6조는 도지사가 문화예술 프로그램 창작사업, 여행 및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사업, 문화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문화이용권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안 제7조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시장·군수에게 위탁하거나,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위임·위탁에 대한 사업 추진과 지원 절차에 대해서 관련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안 제8조는 문화이용권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·군과 지역주관처의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,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#### 다. 종합의견

-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.
- 또한, 도내 문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이용권을 지원하여 문화 격차를 줄이는 데 기

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,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  
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, 형식과  
내용 모두에서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- 다만, 문화예술진흥법과 본 조례에 근거한 통합문화이용권  
(문화누리카드)의 도내 발급률을 살펴보면, 2020년  
100.83%, 2021년 97.47%, 2022년 89.62%로 하향되고 있으  
므로 가맹점 확대와 이용방법, 활용정보 등을 상세히 안내  
하여 문화이용권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 
것입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7. 수정안의 요지 : 「없음」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